

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동명대학교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보직교수를 제외한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의 위촉에 의해 15명 내외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임기는 위원 위촉일로부터 익학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. (개정 2011.4.18.)

③ 입학전형의 공정관리에 필요한 특별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(개정 2021.01.01.)

제3조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21.01.01.)

1. 대학입학 부정방지 대책 수립 시행
2. 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 통제
3.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
4. 대학입학 전형의 사전·중간·사후 자체감사 실시
5. 대학입학 전형별 지원자격 기준·각종 고사 및 세부평가 계획 검증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본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중의 대표자가 대행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.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진행한다. 다만, 전형업무 참관은 1명 이상의 위원 참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, 의결 및 결정사항을 결정 못할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. (개정 2011.4.18.)

④ 본회의 의결사안은 총장에게 보고하여 시정조치 한다.

제5조(간사 및 주관부서) 위원회는 입학홍보처 **입학팀**에서 주관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, 2014.3.28., 2019.10.1., 2022.4.1., **2023.9.1.**)

【전문개정 2006.3.1.】

부 칙

본 규정은 199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5조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